

##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에 따른 행정예고

「약사법」 제23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2018. 4. 25.) 규정에 의거 연곡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강릉시



1. 예 고 명 :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2. 예고기간 : 2024년 4월 4일 ~ 2024년 7월 2일까지(90일간)

3. 주요내용

- 의료기관이 개설된 연곡면은 2024. 7. 3.부로 의약분업 실시
  - 의사는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

4.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예정 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예고기간	취소일자
주문진프라자약국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40	2024. 4. 4. ~ 2024. 7. 2.(90일)	2024. 7. 3.
연곡현대약국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34		
연곡종로약국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35-3		
연곡약국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725-1		

※ 하나로약국(연곡면 진고개로 2742)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준함.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2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하여야 함)
- 다. 제출기관 : 강릉시보건소 질병예방과(강릉시 남부로 17번길 38), 팩스: 033-660-3037
-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서식]

## 의견제출서

예고명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의견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